

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「직업안정법」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07. 03.

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



1. 건 명 : 행정처분 사전 통지
2. 근 거 : 직업안정법 제36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[별표2] 2.개별기준 가. 21) 가),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 및 같은 법 제15조(송달의 효력 발생)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사업장명 (대표자)	사업장 등록번호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	예정된 처분의 제목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1	주식회사 과***엠제 이 (배*윤)	360-**- 03064	행정처분 사전 통지	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취소	경고 처분 후 2개월이 지난 후에도 직업소개 실적이 없는 사실	등록 취소	폐문부재	부사시 사상구 사상로1**번길 27

4. 공고기간 : 2026. 07. 03. ~ 2026. 07. 17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부산북부지청 지역협력과 황승호(☎051-330-981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